

**【참고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63호)**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63호, 2008.12.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만 첨부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3.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4.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5.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평가·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7.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이의 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원

2.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1163호, 2008.12.17>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6호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고등교육법」 제11의2제3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6.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증의 종류 등)** 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

②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의 “평가·인증의 종류”란에 각각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併記)하여야 하며,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구 및 인력 관련

- 가.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
- 다.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
- 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마.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 관련

- 가.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
- 나.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 다.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제5조(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①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 가. 평가·인증기준이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
- 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

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

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

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

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중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한다.

**제6조(평가·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등 실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 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
2.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3.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
4.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

**제7조(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3. “불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다.

**제8조(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목록
2.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위원의 이력사항 포함) 및 운영규정
3.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현황(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근 근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

5. 신청기관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6.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
7.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
8.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
9.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
10.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 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에 의한 점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정 철회와 취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지정을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될 경우, 당해 기관은 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인정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